

돌봄과 복지*

김희강**

일반적으로 복지연구에서 돌봄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아니었다. 돌봄은 복지를 지원하는 수단적 서비스로 이해되거나 개념정의를 난해하고 모호한 광의의 복지단위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차원 혹은 모호하게 개념화된 복지단위를 넘어 중요한 사회운영 원리 중 하나로 접근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와 돌봄을 구분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여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이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노동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린 개념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더 나아가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임을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결국, 돌봄이 복지의 하위 부류가 아니며 대등한 사회원리로서 둘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돌봄, 복지, 돌봄윤리

I.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연구에서 돌봄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아니었다. 돌봄은 복지를 지원하는 수단적 서비스로 이해되거나 개념정의를 난해하고 모호한 광의의 복

* 이 논문의 초고는 2020년 5월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셨던 홍찬숙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학술지 논문 심사과정에서 의미 있는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K2110021).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8S1A3A2075609).

**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돌봄국기와 돌봄정책, 공공철학, 규범적 정책분석 등이다(E-mail: heekangkim@korea.ac.kr).

지단위로 이해된다. 한편으로, 돌봄은 노인돌봄이나 아이돌봄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혹은 제공해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복지의 하위 부류 정도로 해석된다. 일례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현행 법령은 돌봄을 복지 및 보건의료 등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인 사회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 다른 한편으로, 돌봄은 ‘케어’라고 호칭되어 내용과 범위가 다소 모호한 광의의 복지로 접근된다. 일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 불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이를 보건의료, 주거, 요양, 교육, 여가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돌봄을 사회서비스 차원 혹은 모호하게 개념화된 복지단위를 넘어 사회운영 원리 중 하나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영역’의 중요한 사회운영 원리의 입장에서 복지원리와 돌봄원리를 비교하고자 한다.¹⁾ 셋째, 이러한 비교를 통해 돌봄이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대안의 지점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고, 돌봄과 복지가 상보(相補)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의 발단이 된 여성주의적 복지와 돌봄윤리(care ethics)를 논의의 배경으로 살펴보고(II장), 복지원리와 돌봄원리를 비교한 뒤(III장), 복지원리와 돌봄원리가 상보적일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보겠다(IV장).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국가의 맥락에서 돌봄의 함의를 언급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V장).

II. 논의의 배경

한국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윤홍식, 2020). 하지만 동시에 사회담론과 학계연구는 복지국가의 한계 및 복지의 대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시켜 왔다. 특히 2000년 이후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Bonoli and Natali, 2012; 김교성, 2013; 최영준, 2018).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G. Esping-Andersen의 ‘새로운 복지국가’로부터,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대응해 기존 복지패러다임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대안의 복지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하게 전개

1) ‘복지영역(sphere of welfare)’이라는 표현은 Michael Walzer의 논의에서 차용했다. Walzer는 사회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적용되는 규범적 사회운영의 원리를 언급한다(Walzer, 1983). 이 연구는 시민주의 복지원리와 돌봄윤리의 돌봄원리가 적용되는 범위를 소위 ‘복지의 영역’에 한정하여 논의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된다(Esping-Andersen et al., 2002; 이원재·최영준, 2020). 이들 논의의 발단은 다양하며 그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치열한 논쟁이 향후 필요하겠지만, 복지연구의 이러한 추세는 기존 복지를 뛰어 넘어, 더 나은 그리고 더 정의로운 사회와 국가를 향한 학문적 경로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복지연구의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연구가 있다. 최근 일군의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돌봄 재평가 논의이다. 이들은 복지를 보완하는 혹은 복지를 재편하는 대안의 가치 기준으로서 돌봄을 강조한다(Kittay, 2001; Engster, 2015; 마경희, 2011; 김희강, 2016; 백영경, 2017; 홍찬숙, 2020b). 예컨대, Eva Kittay(2001)는 복지란 빈곤을 제거하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공적 가치를 갖는 돌봄 및 돌봄관계를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희강(2016)은 모든 인간의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돌봄필요(care needs), 돌봄관계 및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로 재편된 돌봄국가의 당위를 주장한다. 백영경(2017)은 ‘복지 커먼즈(welfare commons)’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재생산위기를 겪는 현 사회의 복지요구는 돌봄을 매개로 한 생태환경, 자연자원, 공적 공간, 공공서비스 등의 커먼즈의 복원과 생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홍찬숙(2020b)은 자원과 재화의 재분배에 주력하는 복지는 돌봄문제를 다룰 틀이 없음을 비판하고, 돌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기본적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논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를 야기하게 한 자본주의의 성장만능주의 및 경제생산주의에 대한 혁신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현재 사회의 요구와 깊숙이 맞닿아 있다(마이크 데이비스 외, 2020). 코로나19라는 사회위기는 “[위 기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백영경, 2020: 36), 바꿔어야 하는 삶의 방식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망”이어야 하고(홍찬숙, 2020a), “돌봄의 가치가 배합된(inclusion) 성장적 도전”이어야 한다고 보았다(김희강·박선경, 2021). 다시 말해, 코로나이후 사회에 대한 전망과 지향은 돌봄이라는 대안 가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

복지의 대안으로서 돌봄을 제안하는 이들 여성주의 논의는 다음의 배경 속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가부장적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이다. 여성주의 복지연구자

2) 코로나19이후 사회를 전망하며 돌봄에 주목하는 최근 여성주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Kittay, 2020; 김현미, 2020; 백영경, 2020; 오하나, 2020; 장이정수, 2020; 전희경, 2020; 홍찬숙, 2020a).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대전환으로 ‘돌봄뉴딜’과 ‘돌봄포용국가’ 등이 제안된다(배진경, 2020; 백영경, 2020; 김희강·박선경, 2021).

들은 기존의 복지 논의가 공사구분과 성별분업에 기초한 남성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는 복지국가의 성장·발전이란 궁극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한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는 가정내 돌봄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간과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돌봄을 남녀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나누는 문제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들 여성주의 논의는 복지연구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 인식의 부재는 그 자체로 충분한 복지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각성에 기초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복지국가의 지연(遲延)”을 야기했다는 것이다(Fraser, 2017; Orloff, 2010; 안숙영, 2012; 송다영, 2014).

둘째, 돌봄을 단지 노동에 국한시키거나 혹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특정 정책분야라는 접근을 넘어 가치와 원리로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1980년대 여성주의 윤리로부터 시작된 돌봄윤리에 기인한다. Carol Gilligan(1982), Sara Ruddick(1989) 등의 논의를 기초로 한 돌봄윤리는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도덕(규범) 이론이다. 기존 자유주의 정의윤리가 권리, 공정성, 보편성, 추상성 중심의 논리였다면, 돌봄윤리는 책임, 관계성, 응답성, 맥락성 중심의 도덕에 기초한다. 최근에는 도덕이론으로서 돌봄윤리의 적용이 정치적·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대안의 정책원리와 사회운영의 원리로 유의미하게 접근되고 있다(Hamington and Miller, 2006; Engster, 2015; Urban and Ward, 2020). 돌봄윤리의 이러한 연구경향은 최근 한국 학계에서도 이어진다(마경희 2010, 2011; 김희강, 2018; 허라금, 2018). 예컨대, 마경희(2020)는 돌봄정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돌봄필요(욕구)와 관계인 돌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근본적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차원을 넘어 보다 변혁적인(transformative) 돌봄정책의 원리로서 돌봄윤리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송다영 외(2017)는 돌봄윤리에 기초한 ‘민주적 돌봄’ 관점을 개념화하고, ‘민주적 돌봄’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가족정책을 평가·분석한다.

본 연구도 이들 선행연구에 힘입었다. 이들처럼 기존 복지국가의 돌봄 배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돌봄을 사회운영의 가치와 원리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운영의 원리로서 복지와 돌봄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돌봄원리는 복지원리의 한계를 뛰어 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하 논의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복지와 돌봄의 관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원리의 내용과 작용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지와 돌봄을 구분하고 그 원리를 구체화하여 서로 비교하는 시도를 통해, 돌봄이 복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거나 “특정 노동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린 개념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백영경,

2020: 48), 더 나아가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보다 건설적인 대안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임을 논증해 보이고자 한다. 결국, 돌봄이 복지의 하위부류가 아니며 대등한 사회원리로서 둘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I.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일반적으로 사회운영의 원리는 그 바탕이 되는 철학적·사상적 배경도 다양하고 개별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맥락도 다양하다. 예컨대, 복지원리의 경우, Stuart White(2010)는 그 핵심 개념으로 필요(needs), 평등, 자유를 제시하고, 필요, 평등, 자유가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정의되는지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김운태(2016)가 편집한 『복지와 사상』을 보더라도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로부터 마르크스주의 및 신자유주의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개별 운영원리들을 개념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별 원리를 단순화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개별 원리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원리와 돌봄원리의 돌봄원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펼치고자 한다. 복지원리와 돌봄원리를 세 가지 측면 -목적, 보장수단, 실현방법-에서 비교하려고 한다.

1. 목적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복지의 목적은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정원오, 2010: 48). ‘인간다운 생활’이란, 단지 굶어죽음을 방지하거나 빈곤이 없는 상태가 아닌,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의식주, 의료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여가, 문화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생활”을 뜻한다(Beveridge, 1942: 170, 이정우, 2016: 14에서 재인용). 따라서 복지국가란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먹고 살아가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로 정의되며,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첫째,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

한의 생활수준은 ‘국민최저선’ 혹은 ‘국민복지 기본선’이라 불린다. 이는 절대적 빈곤 개념의 관점에서 시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설정하고, 그 기본선(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빈곤집단을 대상화하여 이들에 대해 빈민구제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보편적인 보장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김태성·성경룡, 2014: 49). 둘째, 상대적 빈곤의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시민이 빈곤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정기간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김태성·성경룡, 2014: 51). 사회보험은 대표적인 탈상품화 정책이다. 이는 질병, 산재, 실업, 퇴직 등 뜻하지 않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으로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합리적 시민의 선택으로 해석된다(이정우, 2016).

복지원리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욕구)를 갖는 인간이자 또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산적이 될 수 있는(혹은 되어야 하는), 즉 노동하는 인간이다. 복지국가란 완전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노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회적 위험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가이다. 이 점에서 양재진(2020: 49)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시민의 일정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의 목적이 ‘탈노동’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복지의 목적은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빠졌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탈상품화 만큼 재상품화도 복지국가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복지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일정수준의 소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면 돌봄은 인간다운 삶을 취약한 누군가의 돌봄필요(care needs)에 응답(response)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 응답해야 하는 취약한 인간의 돌봄필요는 소위 ‘위험’이라 불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물론 취약한 인간의 돌봄필요는 개인마다 그 정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겠으나, 이는 인간조건에 구속된 실재(reality)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즉 돌봄필요가 응답됨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Held, 2007: 28-35).

취약한 인간에 대한 응답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것이다(Gilligan, 1982: 19). 돌봄이란 서로 관계를 맺는 행위다(Gilligan, 1982: 134). 기존 복지원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화가 보장되는 제도에 집중한다면, 돌봄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관계에서 찾는다. 돌봄원리에서 인간의 '도덕성'이란 취약하고 무력한 인간을 마주하게 될 때 (취약한 이들과 관계하게 될 때), Virginia Held(2006: 95)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전화(轉化, congeal)시키는 무엇으로 본다. 다시 말해, 취약한 인간 앞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외면할 수 없는 내적 변화와 그 실천이 돌봄원리의 도덕성이다.

이 점에서 Gilligan은 여아들이 하인즈(Heinz)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주목하여 돌봄원리의 관계적 특징을 설명한다.³⁾ 남아들은 딜레마를 서로 대립하는 권리의 대결로서 보고 해결을 시도한 반면, 여아들은 딜레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라는 그물조직에 속한 사람들이며 그러한 인간관계가 유지·존속·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든다. 예컨대, 남아들은 약사의 재산권과 하인즈 아내의 생명권의 대결 프레임 속에서 상위의 권리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한 반면, 여아들은 모두의 존속을 위해 인간관계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하인즈의 아내를 인간관계망 속에 포함시키는 것에 도덕적 우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여아들은 약사에게 하인즈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약사가 약을 저렴하게 팔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물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하인즈와 아내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는 것이다(Gilligan, 1982: 75-97).

돌봄원리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취약성을 지닌 존재이다. 모든 인간은 취약한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 생을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돌봄이라는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호전되며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궁극적인 돌봄의 목적은 인간이 이렇듯 필연적으로 속하게 되는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2. 보장수단

개별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는 시민의 권리로서 이해된다.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개념으로 복지에 접근한 대표적인 입장은 T. H. Marshall의 사

3) 하인즈의 딜레마란 도덕심리학자 Lawrence Kohlberg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평가하는데 사용했던, 도덕규범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질문이다(Gilligan, 1982: 77).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가난한 하인즈는 비싼 약값을 요구하는 약사의 가게에 침입하여 약을 훔쳤다는 가정 아래, 하인즈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를 묻는다.

회권(social rights)이다(Marshall & Bottomore, 1950). Marshall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 시민권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지속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권리로서 시민권은 평등하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평등한 시민권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시민권의 일부로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마셜의 사회권은 자선을 통해 빈곤층에게 시혜를 베푸는 전통적 사고를 넘어, 권리의 개념을 통해 시민의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김윤태, 2016: 145). 사회권으로서 복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근대사회의 주체로서 시민 '개인'과 '자유(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맥락에서 기원했다. 개인은 존재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우선하며,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보장의무를 갖게 된다(송다영, 2016: 301). 사회권 역시,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장의무(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로 상정된다. 둘째, 시민권론은 사회권을 공민권, 정치권과 동등한 차원의 시민권적 기본권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권을 실재화”하였다(여유진 외, 2018: 38). 마셜은 완전한 시민권을 위해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모두는 상호 간에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는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공민권과 정치권은 사회권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기여했고, 사회권 역시 공민권과 정치권이 충분히 성숙하고 완전히 발휘하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여유진 외, 2018: 38).

이렇듯 복지가 시민이 요구하는 권리로서 이해되는 반면, 돌봄은 시민 서로의 취약성에 대한 대응성, 즉 책임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인간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러한 취약한 인간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인 책임을 담는다. 인생사 피할 수 없는 의존의 시기에 다른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기본적으로 돌봄이란 취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에게 응답해야 하는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윤리적인 책임이다. 복지가 원칙적으로 개별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을 복지의 수혜자로, 국가를 복지의 제공자로 성립시킨다면, 돌봄원리는 시민을 돌봄의 수혜대상이자 돌봄의 제공주체로 성립시킨다. 시민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또한 누군가에게 제공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 이전에 취약한 인간을 돌보고 이들과 관계를 맺는 윤리적인 책임 역시 모든 시민에게 성립된다(Kittay, 1999: 119-134).

이 때 책임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라기보다 타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즉 보살피는 행위이다(Gilligan, 1982: 265). 돌봄원리에서 지키려는 '책임' 개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보다 더 적극적인 보살핌의 행위를

뜻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권리’ 개념에 상응하는 쪽으로서 ‘의무’ 개념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뜻한다(Gilligan, 1982: 92, 각주 5). 예컨대, 복지원리에서 복지가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보장 의무로 이해된다면, 돌봄원리에서 돌봄은 권리-의무 프레임 넘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개입할 수 있는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들 서로는 서로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해야 하며 서로에 대해 보살피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Gilligan, 1982: 265).⁴⁾

더 나아가, 이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이 만족하는 돌봄관계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한 책임이며, 우리 모두가 속한 돌봄관계망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서로에 대한 시민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이다. 또한 이는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주는 사람이 그러한 돌봄관계를 담임(擔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조건을 마련하는 책임이다. 이와 동시에 돌봄의 관계 망에 속한 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관계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 때 국가는 이러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고 실현되는 제도적 조건을 보장할 책임을 갖는다.

3. 실현방법

복지는 시장을 규제하고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그 목적(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보장함)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장의 규제 정도와 상응하는 재분배 정도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Esping-Andersen(2007)의 복지국가 유형분류에서 보듯,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장을 보완하는 수준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규제정도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복지를 통한 재분배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또한 해당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즉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중 어떤 것을 갖췄으며 무엇이 강조되고 어떤 내용으로 제도화되었는지에 따라, 시장의 규제 정도와 재분배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지원리는 시장을 그저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을 막고 시장의 분배가 야기한 불평등을 교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분배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과정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

4)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권리-의무 프레임은 돌봄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인즈의 딜레마에서 남아들이 보인 권리-의무 프레임으로는 여아들이 보인 돌봄윤리 프레임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기존 자유주의 윤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여아들의 도덕성은 남아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맥락상 이 두 개념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 둘 간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나라,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집단 행위 기법”이라는 지적처럼 (Garland, 2016: 74), 시장을 관리하는 재분배는 복지의 핵심이자 대표적인 실현방법이 된다(양재진, 2020: 88). 복지는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이기도 하지만 ‘시장과 함께하는 정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산력과 부는 복지국가의 물질적 토대로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역으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은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시장경제의 정당성을 담보해준다고 보는 것이다(양재진, 2020: 46-47).

이에 복지원리는 시장원리와 다른 별도의 재분배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John Rawls의 정의론은 복지국가의 이러한 재분배 규범의 철학적 논거를 제시한다. Rawls에게 복지국가란 시장원리에 따른 소득분배에 대해 재분배하는 기구이며, 재분배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은 이타주의나 온정주의가 아닌 공정성(fairness)이다. 공정성의 기준(Rawls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으로 시장의 소득분배를 재분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지라는 것이다. Rawls의 이러한 입장은 복지를 ‘분배적 정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따라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은 복지국가의 주된 기능이 되게 된다(신정완, 2016: 183-184). Rawls가 제시한 재분배 규범인 공정성 원칙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한 합의의 결과로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며 불편부당성의 특징을 갖는다.

복지가 재분배를 통해 빈곤감소 및 불평등 완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반면 돌봄은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 속 행위를 통한 실천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복지가 자원을 통한 재분배에 주목한다면, 돌봄은 사람을 통한 실천에 주목한다. 돌봄의 실현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혼자서 삶을 이룰 수 없는 아이에게는 재분배되는 물질 재화보다 돌봄필요에 응답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무력한 의존인의 안전과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시간, 시선, 교감을 함께 나누며 인간다운 관계를 키우고 지켜줄 사람이다. 돌봄은 누군가를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사회화하는 응답적 사유(thought)를 동반하지만(Ruddick, 1989), 그렇다고 그러한 사유는 “두뇌만 굴리는 걱정(cerebral concern)”이 아니다(Tronto, 1993: 104). 또한 돌봄은 재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재화를 사람 앞에 두고 가는 서비스도 아니다. 돌봄실천은 시선과 같은 인간만이 교감할 수 있는 비언어적 소통수단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아야 해결되는, 일회적일 수 있지만 대개는 어떤 과정을 구성하는 인간적 실천이다. 돌봄은 누군가의 취약성에 응답할 수 있는 공간적 거리에서 동시간대에 맞춰 누군가의 에너지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도덕적 실천이다. 이러한 실천은 취약한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구조(rescue)가 되며, 나아가 이는 인간다운 삶이 지향하는,

확장된 돌봄관계를 맺고 유지해가는 관계적 씨알의 원천이 된다.

또한 복지가 보편적이고 추상적이며 불편부당성의 특징을 갖는 공정성 원칙을 재분배 규범으로 삼고 있다면, 돌봄실천의 행동규범은 시공간적으로 조건지어지기에 매우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맥락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봄실천 역시 그 실천을 평가하는 규범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Rawls가 언급한 이성(reason)에 기초한 사고실험의 산물이 아니라, 돌봄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실천과 관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행위규범이다(Ruddick, 1989: 55). 예컨대, 앞서 언급한 하인즈의 딜레마를 살펴보자. 정의운리를 상정하는 남아들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의 프레임 속에서 답을 찾는다. 하인즈 아내의 생명은 약사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원칙을 전형으로 보고, 도덕생활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일반적인 원칙(재산권이 중요하지 혹은 생명권이 중요하지)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로 -약을 훔치느냐 마느냐- 추상화하여 깔끔하게 단순화한다. 반면 돌봄운리를 상정하는 여아들의 경우는 대안이 나올 법하지 않을 때조차도 대안을 만들고, 사건을 철저히 관찰하며, 약사나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해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난처한 질문, 즉 ‘약이 정말로 치료효과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할 것을 요구한다(Ruddick, 1989: 75-135, 168). 즉,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정형화된 규범을 따르기 보다는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딜레마 문제에 있어서 “열린 결말”을 유도해내는 것이다(Held, 2006: 31). 이러한 과정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원칙을 우선함으로써 배제되는 고려사항이 없도록, 서로의 맥락과 특수성으로부터 성찰적으로 포용하려는 실천의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비교

	복지원리	돌봄원리
목적	인간다운 삶 (일정수준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대비를 통한)	인간다운 삶 (취약한 인간의 돌봄필요에 응답하는 관계를 통한)
보장수단	시민적 권리	시민적 책임
실현방법	자원의 재분배	관계 속의 (돌봄)실천

* 출처: 저자작성

Ⅳ. 돌봄원리는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복지원리와 돌봄원리의 비교(표 1))를 기초로 하여 돌봄이 복지에 비해 보다 의미 있게 적용되는 지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돌봄원리와 복지원리가 사회운영 원리로서 서로 상보적일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들이다.

1.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다.

복지원리에서 취약한 인간의 필요를 간과했거나 배제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통칭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복지의 중요한 수혜대상으로서 다뤄진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의 노동활동을 원칙적으로 전제하는 복지원리는 그러한 전제에 따라 혜택의 수혜자에게 노동이라는 특정한 방식의 규범과 행동을 요구한다. 그 결과 복지원리에서 노동의 규범과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혹은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급의 상대로 존중되지 않는다. 이것이 복지가 취약한 시민의 필요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고 자주 비판받는 지점이다(백영경, 2017: 131).

물론 아동이나 노인처럼 노동할 수 없는 연령대이거나 장애인처럼 소위 노동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부과되지 않는다. 급여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 연금이나 장애수당은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될 수 있다(양재진, 2020: 49). 따라서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필요충족은 노동의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의 관심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필요와 이에 대한 응답은 그 자체로서의 목적보다는 노동과 생산에 종속적이며 도구적인 것으로 주로 이해된다. 예컨대, 아동에 대한 복지는 번성할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접근되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그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것임을 강조하여 전개된다(안형진, 2020).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공공돌봄도 그 자체의 당위성보다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에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에서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김태성, 성경륜, 2014: 237). 결국 시민주의 복지국가의 두 가지 중요한 정책목표란 완전고용 보장과 사회보장이라는 양재진(2020: 49)의 주장을 상기할 때,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닥쳐 빈곤과 실업상태일 때 개입하는 정책이며 복지에서 전제하는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를 갖는 인간이지만, 이 때 필요충족의 원칙은 노동활동의 전제 위에 설립된 사회적 위험의 대비 측면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다.

반면 돌봄원리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를 노동과 생산에 부차적이나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해야하는 당위에 주목한다. 따라서 돌봄원리는 취약

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돌봄원리는 취약한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취약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필요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돌봄이 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흔히 많은 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으로 타자화한다. 이는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김보영, 2020: 168).

이 점에서 복지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타자화”되고 대상화되기 쉬운 반면, 돌봄은 우리 모두가 인생사 당연하게 겪는 보편적 인간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접근된다. 결국, 복지는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받는 인격적 개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화와 보편적 기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돌봄은 인간다운 삶을 관계에서 찾으며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이 인정되고 돌봄필요가 충족되는 돌봄관계를 그 중심에 둔다. 이를 확장해 볼 때, 이상적 지향으로서의 돌봄은 궁극적으로 Gilligan(1982: 133-134)의 주장처럼,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껴서 그에 응답하고 연결의 그물조직이 유지되게끔 세상을 보살피으로써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봄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도덕적인 고려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통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Gilligan, 1982: 135).

더 나아가, 돌봄은 “자신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하고 보살피는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보다 튼튼한 정초가 될 수 있다(Gilligan, 1982: 135). 물론 ‘연대’는 복지원리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복지원리에서 상정하는 ‘연대’는 사회적 위험의 분산적 공유 개념으로서, 사람들 간에 상호의존 관계(연대)를 형성함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개인과 집단을 위한 재원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려 할 때 그 논거로 활용된다(여유진 외, 2018: 50). 실제로 역사상 복지의 성취는 노동계층이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농민, 중산층, 전문직을 포함하는 폭 넓은 연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돌봄원리는 복지원리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상호의존과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연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돌봄원리는 취약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추상적인 원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신념과 태도로 채워진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연대에 주목한다. 돌봄경험이 인

정되고 장려되어 사회적 가치로 배합된 연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고통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돌봄관계는 사회적 신뢰의 토양을 견고히 한다는 Held(2006: 89-92)의 주장처럼, 돌봄관계에서 자라는 애착과 신뢰의 경험은 사회적 유대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형성의 원료가 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노동자건, 농민이건, 주부건, 남녀노소건, 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이들을 교차해서 묶어내는 연대를 더 튼튼하게 조성할 수 있다. 돌봄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사회적 애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원리에 기초한 연대를 ‘돌봄적 상상력’이라 칭하고자 한다. 돌봄적 상상력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돌봄을 주고받은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과 체험을 유사한 처지에 있는 타인의 심정까지 확장해서 전이(轉移)시키는 도덕적·감정적 능력이다.⁵⁾ 이 능력은 각자가 구체적으로 경험해온 돌봄이라는 보편적 경험에서 파생된 상상력이다. 그래서 ‘돌봄적 상상력’은 각자의 삶에서 내가 애정을 보내고 애착의 대상이 되었던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으로 특징되는 취약한 인간과의 관계적 경험이 기반이 되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위협받고 억눌린 다른 구성원들에게 유대와 연대감을 갖게 되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적인 것이라 백안시해왔던 자식, 부모, 이웃에 대한 애뜻한 감정도 돌봄원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확장시켜 나눌 수 있는 또한 시민적 태도를 고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의 항행(航行)에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돌봄적 상상력은 소위 입주민 갑질로 인해 자살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스크린 도어 정비 중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청년,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등이 우리 모두의 자녀이자 이웃의 부모였음을 되새긴다. 입주민 갑질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연을 적은 청와대 청원사이트 역시 그가 “한 가정의 사랑받는 소중한 할아버지, 남편, 아빠”였음을 상기시킨다(청와대 청원사이트). 더 나아가 돌봄적 상상력은 단절된 돌봄관계에서 사람들이 위협받고 동료들이 고통받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 모두와 국가에 적극적으로 묻는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법과 제도도 그 당위성의 논거를 추상적인 가치나 포괄적인 원리에만 두는 대신, 돌봄관계가 위협받거나 끊겨서는 안 된다는 돌봄적 상상력에 기초한 연대감에 함께 호소할 수 있다.

예컨대, 스크린 교통사고로 희생된 김민식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위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법)’이 처리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5) 유사한 맥락에서 Christopher Groves(2014)도 사회적 공감력을 일컫는 말로 ‘care imaginar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엄마와 아빠라는, 각자의 돌봄경험과 돌봄관계를 상기시키는 돌봄적 상상력과 연대감이 법안 처리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로 ‘민식이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아이들(해인이, 민식이, 하준이, 태호)의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일 보도되는 오염하는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의 안전을 정치권이 불모로 삼는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이는 ‘민식이법’이 우선 처리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오마이뉴스, 2019/12/10). 그러나 ‘엄마들의 눈물’의 기자회견만으로 ‘민식이법’이 처리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자식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이 부실한 안전으로 자식을 잃은 ‘엄마들의 눈물’을 통해 그 슬픔에 동감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 어린이 안전에 부실한 사회의 전반적인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엄마들의 기자회견이 보통의 아이들의 일상과 엄마들의 삶도 법과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게 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의 전환점이 된 것이다(최이숙, 2020; 오마이뉴스, 2019/12/26).

이러한 돌봄적 상상력은 스웨덴의 사민당 당수였던 한손이 국민적 ‘연대’를 주장한 ‘국민의 집’ 연설 내용과 닮았다. 한손은 적녹동맹을 주장하며 노동자(적) 및 농민(녹)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국가를 좋은 가정에 비유한다.

가정의 기초는 공동체와 연대이다. 좋은 가정에는 특권이나 무시, 편애와 의붓자식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희생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강탈하지도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 협동, 지지가 넘쳐난다(페르 알빈 한손의 1928년 의회 연설 중, 여유진 외, 2018: 48에서 재인용).

‘돌봄적 상상력’은 기존의 복지원리가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던 인간의 불가피한 취약성과 이들에 대한 응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돌봄원리는, 한손이 묘사한 ‘연대’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희생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강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 받는 동료 구성원들이 내 자식과 내 부모로서 이해되기에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각자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돌봄경험에서 연유한 돌봄적 상상력과 돌봄관계망에 의해 뒷받침되기에, 이는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기 때문이다.

2. 돌봄원리는 시민이 담임해야 할 책임을 더 권장한다.

마셜의 사회권은 빈곤층에게 시혜를 베푸는 전통적 사고를 넘어, 권리 개념을 통한 시민의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국가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고 앞서 살펴보았다. 권리 담론은 복지를 시혜나 자선이 아닌 시민이 당연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를 시민적 권리로서 이해하는 이러한 장점은 하지만 다른 한계를 함께 노정한다. 즉, 권리의 프레임으로 논의되는 복지는 이에 대한 의무 논의를 최소화한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시민적 권리로서 복지를 제한되게 개념화하게 되면, 복지를 보장받는 개별 시민이 동료시민 및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시민적 책임(의무)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게 만든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 속에서 복지권리와 복지책임 간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이 복지국가 담론 속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영국의 신노동당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담론은 복지권리에 상응하는 복지수급자가 따라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강조한다. 복지는 단지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이 함께 강조되는 “상호책임성의 논리”가 복지개혁의 원칙으로 언급된다(정원오, 2010: 151-2).

물론 기존 복지원리에서 의무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수혜를 제공받는 시민은 크게 두 가지 의무, 즉 노동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노동의 의무란 노동자로서 시민은 노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 및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납세의 의무란 시민은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을 납세하여 국가가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복지국가가 상정하는 시장경제와 사회보장 간의 선순환 관계 속에서 무리 없이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의 전제는 시민을 노동자의 역할로 또한 국가를 (혹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세금이라는 공적 자원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수행하는 역할로 주로 제한한다(신광영, 2011: 206). 그 결과 노동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 근거해서는 동료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복지를 보장받는 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어떤 의무(적극적 책임)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동료 시민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돌봄의 경우, 나와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시민적 책임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돌봄은 취약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이다.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이들과 관계를 맺는 윤리적 책임은

서로 서로를 보살피고 상생해야하는 시민의 공유된 사회적 책임에 상응한다. 이렇듯 서로를 돌보는 돌봄책임이라는 전제가 우선되어 충족되지 않는다면, 복지원리가 언급하는 타인의 권리도 그것이 존중될 수 있는 상호관심과 연대의 토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Held, 2006: 249). 따라서 복지원리에 비해 돌봄원리는 “취약한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기존의 도덕보다 신선하고 견고한 진지(陣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eld, 2006: 169).

돌봄원리에서 시민이 담임해야 하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관계망을 함께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돌봄을 주는 사람들과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즉 돌봄관계에 속한 사람들이 그 관계를 담임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마련하는 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시민적 책임으로서 돌봄은 저출산을 포함한 총체적인 ‘돌봄위기’에 처했다고 진단받는 현재의 한국사회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정책으로 지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출산율은 이전에 비해 더 떨어져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받고 있다(서울신문, 2021/02/24). 하지만 돌봄을 시민적 책임으로 본다면 돌봄의 사회문제에 있어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 백영경(2017, 114)이 지적하듯이, 저출산과 돌봄위기는 “재화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며, 이는 “실제로는 삶의 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돌봄문제는 여타 수당지원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돌봄을 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구조 속에서 누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지,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하면 서로가 함께 공정하게 돌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에 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부터 저출산과 돌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돌봄원리에서 보는 국가의 역할은 시민의 돌봄책임이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시민들이 돌봄책임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담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이 때 국가는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개별 시민에게 제공·전달하는 주체를 넘어선다.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수위의 돌봄관계망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겠끔 충분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권적 시민권으로 복지에 접근하는 기존 복지원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배드파트너스’)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경향신문,

2020/01/19). 이 사이트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양육비 지원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배경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법률시스템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개인(배우자) 간 채무계약의 이슈로 상정되는 이상,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제한되게 된다. 결국 이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명예권과 아이의 생존권 간 대결양상의 프레임으로 논쟁화되었다. 웹사이트 논란 이후, 정부정책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향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더 나아가 형사처벌에 신상공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육비 이행을 사적인 계약 사안으로 보고 있는 현 법률시스템 아래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고 그 결과 실제적인 처벌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받는다(KBS, 2021/03/28). 하지만 돌봄원리의 측면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접근한다면, 아이의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는 돌봄책임에 해태(懈怠)한 자이기 때문에, 아이와 남은 부모의 돌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 부모에 대해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이들을 처벌하고 제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기대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돌봄원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이나 혹은 보육(요양)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대해서, 또한 가정이나 보육(요양)시설에서 돌봄제공자가 겪는 착취와 불평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범적 당위성이 존재하게 된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간의 힘의 불균등으로 인해, 아이, 노인, 장애인 같은 돌봄수혜자는 돌봄제공자의 학대와 지배에 상시적으로 비(非)보호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가정과 시설에서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 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다. 최근 기사화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나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 등이 비근한 예이다(세계일보, 2021/02/13; 한겨레, 2021/01/21). 그러나 동시에 돌봄제공자 역시 누군가를 돌봄으로 인해 심리적·감정적으로 소진되며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돌봄관계 밖 제3자(주로 남편이나 국가)의 지배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임금을 받는 유급 돌봄제공자의 경우도, 다른 노동과 달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경제적 처분에 위태롭게 종속되게 된다. 이 경우 돌봄원리에서 상정하는 국가는 학대와 지배에 취약한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 모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돌봄관계가 정의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국가는 돌봄관계에서 파생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함으로써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책임을 담임한다(김희강·박선경, 2021).

사회학자 신광영은 복지를 국방이라 표현한다. 과거에는 국방이 외부로부터 받는 위

협에 대비해 국토와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방은 실업, 빈곤, 질병 같은 국가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복지는 국방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한다(신광영, 2011: 206). 이는 개인의 안전과 안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해석이 중요하게 간과한 지점이 있다면, 국방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의 국민의 의무라는 점이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적 의무와 책임으로서 복지 역시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서로 간 돌보고 또한 함께 돌봐야 하는 책임에 주목하는 돌봄원리는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민은 시민권적 사회권의 담지(擔持)자이지만, 동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동료 시민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공유된 돌봄책임의 담임(擔任)자이기 때문이다.

3. 돌봄원리는 자원이 아니라 (돌봄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사람이 더 주목한다.

복지원리는 빈곤을 막고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분배적 측면에 주목한다. 그래서 복지 이슈는 재화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쟁점에 국한되고, 차별이나 의사결정의 지위 및 절차의 부정의 같은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Young, 1990). 복지원리는 ‘복지=분배=정의’라는 프레임 속에서, 시장과 사회의 자원(재화)을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복지의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 중심의 복지체제는 다음의 지점에서 비판받고 있다(Young, 2000: 3장). 첫째, 이러한 체제 속에서 분배의 기준과 절차는 추상적 규칙과 형식적 절차로 규제되고, 동시에 복지실무는 규격화·보편화·표준화되게 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공동의 결정 혹은 다양한 맥락과 구체적인 재량 아래 놓여 있는 삶의 많은 활동들이 추상적 규칙과 형식적 절차 아래에서 규격화·보편화·표준화되게 된다. 복지가 엄격한 행정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복지관료제’로 통칭된다. 둘째, 복지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분배의 규칙에 “종속된 고객이자 소비자”로서 “관료체제의 지배”의 대상이 되게 된다(Young, 2000: 183). 물론 시민은 고객이자 소비자로서 국가의 활동이 만족스러운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 역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동시에 시민을 단지 사적 존재로 치부해 버릴 뿐이다.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복지관료제의 비판적 면면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Hilary Cottam은 최근 저서에서 복지국가의 탄생을 이끌 만큼 선도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영국복지의 관료적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한다(Cottam, 2018). 코탐이 비판하는 영국복지의 최대 한계는 경직된 복지제도와 무력해진 복지현장이다. 복제체제는 과도하게 촘촘한 규칙과 무정한 절차의 시스템 속에서 복지대상자나 사회복지사 모두 무력함을 경험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잡기 어려운 시스템과 미로 같은 과정,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짜증나는 규칙들”은 사회복지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에 허덕이게 만들었고, 복지대상자 역시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소포넘기기 게임”의 배달상자처럼 이리저리 옮겨진다”라고 설명한다(Cottam, 2018: 31, 34). 후자는 행정관리 시스템 속에서 탈인격화되는 복지대상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관료제적 복지행정의 모습은 한국 사례에서도 역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예컨대, 50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20대 청년 돌봄제공자의 자전적 에세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에서 저자는 복지대상자가 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다. 저자는 “이중 삼중으로 자물쇠를 채운 복지의 문”을 열기위해, 칸막이도 없는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난을 거둬 이야기하고 다종다양의 서류꾸러미를 받아들여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로 “등급”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적는다(조기현, 2019: 109-113). 10년째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의 자전적 에세이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에서도 관료제적 복지행정의 한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저자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도 잘 모르고 실수하는 수없이 많은 서류준비 때문에, 사안별로 주민센터, 구청, 국민연금공단, 복지부, 특수교수청을 일일이 문의하고 이곳저곳을 다시 들러야 하는, 복지대상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설명하며 반문한다(류승연, 2018: 101-109). “대체 아는 게 무엇이랍니까?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자님들.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당신들이 모르면 우리는 어찌하랍니까?”(류승연, 2018: 103-104). 이 점에서 백영경은 복지관료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는다.

국가와 시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수요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서 파악하고자 하며, 실제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돌봄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지를 찾아내려 하기 보다는 서류에 의존하는 관료적인 태도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비용과 수요를 감축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는 양상을 보인다(백영경, 2017: 135).

결국 관료적 복지체제 속에서 실제로 수혜받아야 하는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없이 이뤄진 수많은 규칙과 절차로 인해, 담당공무원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지수혜자는 항상 평가받고 관리받아야 하는 비인격의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원리와는 달리 돌봄원리는 규격화·보편화·표준화된 규칙이나 절차에 의존하여 누군가의 필요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돌봄원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를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맥락과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함께 동반한다. 그리고 이는 필요를 갖는 개별 시민과 동료 시민, 그 시민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계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따라서 돌봄원리는 분배되어야 하는 자원의 관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갖는 사람들에 맥락과 상황에 맞는 응답과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춘다. 또한 이들의 관계회복에 더 주목한다. 다시 말해, 필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수혜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이 단지 수단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의 가난을 공공연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규칙에서 ‘소포’처럼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게 된다.

영국의 복지관료제를 비판한 Cottam의 대안도 결국은 복지현장에 적용되는 관계 중심의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Cottam은 단지 돈이나 관리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복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소위 ‘복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이전처럼 사회보장과 실업보호 같은 재화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필요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다. 유년기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노동의 경험이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는 단지 금전적인 것을 넘어선다. 이 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구체적으로 대응되어야 한다고 Cottam은 보았다. 결국, 복지란 주어진 범주의 모든 사람에게 자원이 일률적으로 분배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맥락과 처한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온정을 갖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언어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결과 관계, 이들의 필요와 존엄에 대해서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코탐은 지적한다(Cottam 2018: 62). 돌봄원리는 코탐이 지적한 기존 복지의 이러한 한계를 채워줄 수 있다. 돌봄은 인간적인 연결과 관계, 인간의 필요와 존엄에 대한 ‘원리’이자 ‘언어’가 될 수 있다.

관료제의 형식주의와 보편주의, 규칙의 비개인성은 의사결정자의 변덕이나 호불호의

자의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사례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매커니즘은 없기 때문에, 비개인적인 규칙을 개별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은 불가피하다(Young, 2000: 183). 이 때 돌봄 원리는 돌봄제공자(혹은 복지담당자)의 개인적 판단과 재량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 최근 많은 논의들은 복지행정에 있어 정책을 실제 실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일선 관료의 실천윤리로서 돌봄윤리를 강조한다(Stensota, 2015; Engster, 2021).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일선 관료는 법률과 정책에 의해 제한되지만, 동시에 개별 시민을 상대하고 개별 사안을 적용할 때 거의 항상 재량적 판단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그 재량권의 행사는 개별 '시민의 상황과 필요의 특수성'에 맞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실업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직업훈련에 참석해야 한다면, 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일선 관료는 시민들이 자신의 집에 가깝고 관심사에 맞는 직업훈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특히 일선관료와 시민과의 관계는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이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시민의 필요를 살피고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책임지고 헌신하는 일선관료의 실천은 구체적인 돌봄실천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행정의 일선관료는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이기 이전에 누군가를 돌보는 '돌봄제공자'이다. 돌봄이란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필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원리와 보편적인 절차만을 통해서도 확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Engster, 2020: 8-10).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원리와 돌봄원리의 비교를 통해, 돌봄이 복지의 한계를 아우르는 건설적인 가치이자 사회운영의 원리임을 논증하고, 돌봄이 복지의 하위부류가 아닌 대등한 사회원리로서 둘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이었다.

복지가 일정수준의 소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를 통해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돌봄은 취약한 인간의 돌봄필요에 응답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는다.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서 접근되는 반면, 돌봄은 시민 서로가 함께 돌봐야 하는 책임으로서 접근된다. 복지는 주로 자원의 분배를 통해 실현되는 반면, 돌봄은 관계 속의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비교를 기초로 했을 때, 돌봄원리는 복지원리에 비해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더 포용적이며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수 있으며, 복지원리에 비해 담임해야 하는 시민적 책임을 더 권장하며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책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지원리에 비해 자원의 분배보다는 사람중심의 실천에 주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실천윤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복지원리와 돌봄원리의 비교는 Gilligan이 설명한 정의윤리와 돌봄윤리의 프레임을 닮았다. 정의윤리는 권리, 정의, 공정을 중심으로 한 가치에 초점을 두는 반면, 돌봄윤리는 관계, 책임, 공감, 실천을 중심으로 한 가치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Gilligan의 의도이다. Gilligan은 자신의 의도가 정의윤리와 돌봄윤리가 얼마나 서로 대체적이고 대립적인지 혹은 이 둘 중 어떤 가치가 더 나은지에 대해 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Gilligan의 의도는 포괄적인 도덕이론은 정의윤리와 돌봄윤리의 통찰력 모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껏 간과되어 왔던 돌봄윤리의 통찰력을 보다 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Gilligan, 1982: 46).

결론적으로, '복지영역'의 사회운영 원리 입장에서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모두를 의미 있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간과되고 저평가된 돌봄원리의 입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야 한다. 복지의 노동(생산)중심, 권리중심, 공정(정의)중심, 분배중심의 패러다임과 함께 돌봄의 취약성중심, 필요중심, 책임중심, 맥락중심, 실천중심의 패러다임이 평등한 가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복지원리가 노멀(normal)이 된 현재의 입장에서, 앞서 Gilligan이 기존 발달심리학에서 돌봄윤리를 언급할 때처럼, 이는 매우 급진적인 시도로 보일 수 있다(Gilligan, 1982: 29). 하지만 포괄적인 도덕이론을 위해 정의윤리와 돌봄윤리의 통찰력 모두가 필요하듯, 복지원리와 돌봄원리 모두는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한 국가를 위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필요하다. 재분배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사회권적 권리로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와 더불어, 서로의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으로 다져진 시민의 돌봄실천을 통해 서로의 생존과 안녕을 담보 받으며, 그러한 돌봄실천의 관계와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교성. 2013.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40(1): 31-59.
- 김보영. 2020. “사람을 떠넘기지 않는 돌봄 시스템 만들기.” 이원재·최영준 외.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162-177. 서울: 어크로스.
- 김윤태. 2016. 《복지와 사상》.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태성·성경륜. 2014. 《복지국가론》. 개정2판. 파주: 나남.
- 김현미. 2020. “코로나19와 재난의 불평등.” 김은실 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71-80. 서울: 휴머니스트.
- 김희강. 2016. “돌봄국가.” 《정부학연구》, 22(1): 5-30.
- _____. 2018. “케어리즘.” 김희강·임현 편. 《돌봄과 공정》, 97-129. 서울: 박영사.
- 김희강·박선경. 2021. “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한국행정학보》, 55(2): 55-80.
- 류승연. 2018.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파주: 푸른숲.
- 마경희. 2010. “돌봄의 정치적 윤리.” 《한국사회정책》, 17(3): 319-348.
- _____.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돌봄.” 《페미니즘연구》, 11(2): 85-116.
- _____.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돌봄의 재조직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 여성노동현실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2020년 9월 16일.
- 마이크 데이비스 외. 2020.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정호중 역음. 서울: 책갈피.
- 배진경. 2020. “성평등 노동과 ‘돌봄 뉴딜’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여성가족부·전국여성노동조합, 2020년 9월 16일.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환경사회학연구ECO》, 21(1): 111-143.
- _____. 2020. “탈성장 전환의 요구와 돌봄이라는 화두.” 《창작과비평》, 189(가을): 36-48.
- 송다영. 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한국여성학》, 30(4): 119-152.
- _____. 2016. “페미니즘과 복지.” 김윤태 편. 《복지와 사상》, 277-325. 서울: 한울아카데미.
- 송다영·장수정·백경흔. 2017. “‘민주적 돌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젠더와 문화》, 10(1): 121-152.
- 신광영. 2011.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김연명 외. 《대한민국 복지》, 201-208. 서울: 두리미디어.

- 신정완. 2016. “롤스의 정의론과 복지국가.” 김윤태 편. 《복지와 사상》, 180-212. 서울: 한올아카데미.
- 안숙영. 2012. “젠더의 렌즈로 본 복지공간.” 《한국여성학》, 28(1): 113-146.
- 안형진. 2020. 《능동적 시민성의 입장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재진. 2020. 《복지의 원리》. 서울: 한겨레출판.
- 여유진·남찬섭·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오하나. 2020. “돌봄: 일류살리기로서의 돌봄에 대한 상상.” 추지현 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127-150. 파주: 돌베개.
- 윤홍식. 2020.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원재·최영준. 2020.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서울: 어크로스.
- 이정우. 2016. “케인즈주의와 복지.” 김윤태 편. 《복지와 사상》, 9-42. 서울: 한올아카데미.
- 장이정수. 2020. “한국판 뉴딜을 넘어 페미니스트 그린 뉴딜.” 김은실 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112-122. 서울: 휴머니스트.
- 전희경. 2020. “감염병과 약한 자들의 페미니즘.” 김은실 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91-100. 서울: 휴머니스트.
- 정원오. 2010. 《복지국가》. 서울: 책세상.
- 조기현. 2019. 《아빠의 아빠가 됐다》. 서울: 이매진.
- 《청와대 청원사이트》. 2021. “저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752> 검색일 2021년 2월 20일.
- 최영준. 2018. “한국복지국가의 새로운 DNA.” 《한국사회정책》, 25(4): 39-67.
- 최이숙. 2020. “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석당논총》, 77: 39-66.
- 허라금. 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 김희강·임현 편. 《돌봄과 공정》, 67-96. 서울: 박영사.
- 홍찬숙. 2020a.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다른백년》. 2020/06/02.
- _____. 2020b. “개인화와 복지체계 변화의 필요성.” 《다른백년》. 2020/07/06.
- 《경향신문》. 2020/01/19. “잠들어 있는 국가에 돌을 던진 ‘배드 파더스.’”
- 《서울신문》. 2021/02/24. “15년간 225조 ‘백약이 무효’... ‘난임육아 등 직관적 지원, 청년일자리 만들라.’”
- 《세계일보》. 2021/02/13. “‘정인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17일 본격 재판 돌입.”
- 《오마이뉴스》. 2019/12/10. “‘민식이법 악법 아닙니다’ 민식이 아빠의 마지막 당부.”
- 《오마이뉴스》. 2019/12/26. “[2019 올해의 인물]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선한 사람들

의 연결.”

《한겨레》. 2021/01/21. “장애아동에 물 뿌리고, 밀치고...보육교사 6명, 학대 의혹으로 입건.”

《KBS》. 2021/03/28. “한없이 긴 소송 절차”..양육비 미지급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 Beveridge, William Henry.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HMSO.
- Bonoli, Giuliano and David Natali. 2012. *The Politics of the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ttam, Hilary. 2018. *Radical Help*. London: Virago Books. 박경현·이태인 역(2020). 《레디컬 헬프》. 서울: 착한책가게.
- Engster, Daniel. 2015. *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21. “A Public Ethics of Care for Policy Implement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forthcoming, DOI: 10.1111/ajps.12487.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박시중 역(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Esping-Andersen, Gosta et al.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2013. *Fortunes of Feminism*. London: Verso.
- Garland, David. 2016.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정일영 역(2016).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서울: WBB.
- Gilligan, Carol.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허란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서울: 동녘.
- Groves, Christopher. 2014. *Care, Uncertainty, and Intergenerational Ethics*.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Hamington, Maurice and Dorothy C. Miller. 2006. *Socializing Care*. Lanham: Rowman & Littlefield.
- Held, Virginia. 2006. *The Ethics of Ca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2017). 《돌봄: 돌봄윤리》. 서울: 박영사.
- Kittay, Eva Feder. 1999. *Love's Labor*. New York: Routledge. 김희강·나상원 역(2016). 《돌봄: 사랑의 노동》. 서울: 박영사.

- _____. 2001. "From Welfare to a Public Ethic of Care." In Nancy J. Hirschmann & Ulrike Liebert, Ulrike (eds.). *Women and Welfare* (pp. 38-64),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_____. 2020. "Covid, Care, Gender."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코로나시대 사회적 돌봄의 위기와 여성노동' 웹컨퍼런스 발표문. 미출간원고. 10월 20일.
- Marshall, Thomas Humphrey & Tom Bottomore.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성은 역(2014). 《시민권》. 서울: 나눔의 집.
- Orloff, Ann Shola. 2010. "Gender." Castles, Francis G.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pp. 254-26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ddick, Sara. 1989. *Maternal Thinking*. New York: Balletine Books. 이해정 역 (2002). 《모성적 사유》. 서울: 철학과 현실사.
- Stensota, Helena Olofsdotter. 2015. "Public Ethics of Care-A General Public Ethics." *Ethics and Social Welfare*, 9(2): 183-200.
- Tronto, Joan C. 1993. *Moral Boundari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Urban, Petr & Lizzie Ward. 2020. *Care Ethics,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State*. Palgrave Macmillan.
- Walzer, Michael. 1983.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 White, Stuart. 2010. "Ethics." Castles, Francis G.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pp. 19-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Iris Marion.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도균·조국 역(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서울: 모티브북.
- _____.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김희강·나상원 역(2020). 《포용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Care and Welfare

Hee-Kang Kim

In general, care has not been a major topic in welfare studies. It has been understood as a kind of service that supports welfare or a unit of welfare in which the definition is difficult and ambiguous. This study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care by approaching care a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First, it tried to differentiate care from welfare, characterizing and comparing them. Through this, the study attempted to prove that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 part of welfare-supporting services or a concept that is “reduced to a specific area of labor.” Then, it tried to demonstrate that care is a constructive alternative value and principle that encompasses the limits of welfare. To the end, this study argued that care and welfare can complement each other as equivalent social regulatory principles.

※ Keywords: Care, Welfare, Care Ethics